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2014 년 제 33 호 법률 시행 규정에 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규정 2019 년 31 호

유일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숙고 :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2014 년 법률 제 33 호 제 1 조, 제 16 조, 제 21 조 제(3)항, 제 44 조 제(3)항, 제 46 조 제(3)항, 제 47 조 제(4)항, 제 52 조 와 제 67 조 제(3)항 규정 이행을 위해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2014 년 법률 시행 규정 제 33 호 관련 정부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

참작 : 1. 1945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 제 5 조 제 (2) 항;
2.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2014 년 법률 제 33 호(2014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 295 호, 추가 관보 제 5604 호);

결정:

제정 :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2014 년 33 호 법률 시행 규정 관련 정부 규정 .

제 I 장

총칙

제 1 조

본 규정에서의 해당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할랄 제품 보장이란, (이하 “JPH”이라 한다)할랄 인증서로 입증된 제품의 확실한 법적 할랄성.

2. 제품이란 음식,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 제품, 생물학적 제품 및 지역 사회가 쓰고,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 및 / 또는 서비스.
3. 할랄 제품이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신고된 할랄 제품.
4. 할랄 제품 공정 이란,(이하 “PPH”이라 한다) 제품의 원료 공급, 가공, 저장, 포장, 유통, 판매 및 출하를 포함한 제품의 할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5. 원료란 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성분.
6. 할랄 인증서란 인도네시아 울라마 위원회(MUI)에서 발행한 파트와에 따라 제품에대한 할랄성을 인정한 할랄인증청이 발급한 할랄 인증서.
7. 할랄 라벨이란 제품의 할랄성 표시.
8. 장관이란 종교 분야 정부 업무를 수행 하는 장관.
9. 할랄인증청(이하” BPJPH”라 한다) 할랄 제품 보장 실시를 위해 정부가 조직한 공공기관
10. 청장이란 할랄인증청(BPJPH) 청장
11. 인도네시아 울라마 위원회란 (이하”MUI”라 한다) 율법학자, 지도자 및 이슬람교도 지식인 모임
12. 할랄 검사 기관이란, (이하”LPH”라 한다) 할랄 제품에 대한 할랄성 검사 및/또는 테스트를 진행하는 기관.
13. 할랄 감사관이란 제품의 할랄성 검사 진행 능력을 갖춘 사람.
14. 사업자란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 형태의 개인 또는 기업.
15. 할랄 감독관이란 할랄제품공정(PPH)에 대한 책임자.

제 2 조

- (1) 인도네시아 지역에 수입, 유통 및 거래되는 제품은 의무적으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 (2) 하람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할랄 인증 의무에서 제외된다.
- (3) (2)항에서 규정한 제품에는 비할랄 정보가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4) 사업자는 제(3)항에서 규정한 제품에 비할랄 정보를 의무적으로 부착 해야 한다.

제 3 조

제 2 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할랄 인증서는 할랄 원료를 사용하고 할랄제품공정(PPH)을 준수한 제품에 발급된다.

제 II 장

할랄 제품 보장 실시 관련 협력

제 1 부

일반

제 4 조

- (1) 할랄제품보장 실시는 장관이 주관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한 할랄제품보장 실시 이행에 있어 장관의 책임하에 할랄인증청(BPJPH)이 조직된다.
- (3) 제(2)항에서 규정한 할랄인증청(BPJPH)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a. 할랄제품보장(JPH) 정책 공식화 및 제정 권한;
 - b. 할랄제품보장(JPH) 규범, 표준, 절차 및 기준 제정;
 - c. 제품의 할랄 인증서 및 할랄 라벨 발급 및 취소;
 - d. 해외 제품에 할랄 인증서 등록;
 - e. 할랄 제품 사회화, 교육 및 공포;
 - f. 할랄검사기관(LPH)에 대한 인가;
 - g. 할랄 감사관 등록;
 - h. 할랄제품보장(JPH)에 대한 감독;
 - i. 할랄 감사관 육성 ; 및
 - j. 할랄제품보장(JPH) 실시 분야 국내외 기관들과의 협력.
- (4) 제(3)항에서 규정한 권한 행사에 있어 할랄인증청 (BPJPH)은 다음의 기관들과 협력한다:

- a. 관련 부처 및/또는 기관;
- b. 할랄검사기관(LPH); 및
- c. 인도네시아 올라마 위 MUI).

제 2 부

할랄인증청(BPJPH)과 관련 부처와의 협력

제 5 조

- (1) 제 4 조 제 (4)항 a 호 에서 규정한 할랄인증청(BPJPH)과 관련 부처와의 협력은 관련 부처의 직무 및 역할에 따라 진행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한 관련 부처는 다음과 같은 분야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를 포함한다:
 - a. 산업;
 - b. 무역;
 - c. 보건;
 - d. 농업;
 - e. 협동 조합 및 중소기업;
 - f. 외교; 및
 - g. 그외 할랄제품보장(JPH) 실시 관련 분야

제 6 조

- 제 5 조 제(2)항 a 호에서 규정한 산업분야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와 할랄인증청(BPJPH)와의 협력은 다음과 같다:
- a. 할랄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공 원료, 첨가제 및 첨가물 관련 분류, 지침 및 산업 감독;
 - b. 중소기업에 위한 할랄 지원;
 - c. 할랄 산업 단지 설립; 및
 - d. 각각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할랄제품보장(JPH) 실시 관련 기타 업무 협력;

제 7 조

- 제 5 조 제(2)항 b 호에서 규정한 무역 분야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와 할랄인증청(BPJPH)과의 협력은 다음과 같다:

- a. 사업자와 지역주민 육성;
- b. 시장에 유통되는 할랄 제품 감독;
- c. 무역분야 사업자를 위한 할랄 제품 보장 적용 지원;
- d. 할랄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 확대; 및
- e. 각각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할랄제품보장(JPH) 실시 관련 기타 업무 협력.

제 8 조

제 5 조 제(2)항 c 호에서 규정한 보건 분야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와 할랄인증청(BPJPH)과의 협력은 다음과 같다:

- a. 건강용품 및 가정용 건강 상비용 물품에 대한 할랄 인증서 및 할랄 라벨 감독;
- b. 건강용품 및 가정용 건강 상비용 물품에 대한 할랄 인증 지원
- c. 건강용품 및 가정용 건강 상비용 물품에 대한 할랄 인증서 및 할랄 라벨 취소 권고; 및
- d. 각각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할랄제품보장(JPH) 실시 관련 기타 업무 협력.

제 9 조

제 5 조 제(2)항 d 호에서 규정한 농업 분야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와 할랄인증청(BPJPH)과의 협력은 다음과 같다:

- a. 할랄 제품 사회화, 교육 및 공포;
- b. 가축/가금류 도축장 및 가축/가금류 도살장 요건 규정;
- c. 가축/가금류 도축 지침 규정;
- d. 육류 및 부산물 관리;
- e. 가축/가금류 도축장 및 가축/가금류 도살장을 위한 할랄 지원;
- f. 동물식품 사업부, 품질보장제도, 농산물 식품안전 등에 대한 수의사 관리 인증 지침 규정; 및
- g. 각각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JPH 진흥 관련 기타 업무 협력.

제 10 조

제 5 조 제(2)항 제 e 호에서 규정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분야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와 BPJPH 와의 협력은 다음과 같다:

- a. 협동 조합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자를 위한 제품 할랄성 인증 사회화 및 지원;
- b. 협동 조합 및 중소기업 사업자를 위한 할랄 지원;
- c. 협동 조합 및 중소기업 사업자 자료취합;
- d. 협동 조합 및 소상공인, 소기업 사업자를 위한 할랄 지원 조율 및 육성;
- e. 소상공인, 소기업 사업자를 위한 자료취합 조율 및 육성;
- h. 각각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할랄제품보장(JPH) 실시 관련 기타 업무 협력.

제 11 조

제 5 조 제(2)항 f 호에서 규정한 외교 분야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와 할랄인증청(BPJPH)과의 협력은 다음과 같다:

- a. 국제협력 지원;
- b. 해외 할랄 제품 홍보;
- c. 해외 할랄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 d. 각각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할랄제품보장(JPH) 실시 관련 기타 업무 협력.

제 12 조

제 5 조 제(2)항 g 호에서 규정한 할랄제품보장(JPH) 실시 관련 기타 분야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와 할랄인증청 (BPJPH)과의 협력은 다음과 같다:

- a. 할랄 제품 사회화, 교육 및 공포;
- b. 각각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할랄제품보장(JPH) 실시 관련 기타 업무 협력.

제 13 조

협력 절차에 관한 제 6 조에서 제 12 조까지의 조항은 장관령에 의해 규제된다.

제 3 부

할랄인증청(BPJPH)과 관련 기관간 협력

제 14 조

- (1) 제 4 조 제(4)항 제 a 호에서 규정한 할랄인증청(BPJPH)과 관련 기관간 협력은 관련 기관의 직무 및 역할에 따라 진행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한 관련 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비부처 정부기관 또는 비구조적 기관을 포함한다:
 - a. 약품 및 식품 감독;
 - b.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 c. 인가; 및
 - d. 그외 할랄제품보장(JPH) 실시 관련 분야.

제 15 조

제 14 조 제(2)항 제 a 호에서 규정한 할랄인증청(BPJPH)과 약품 및 식품 감독 분야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비부처 정부기관과의 협력은 다음과 같다:

- a. 약품, 전통약재,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및 가공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
- b. 유통되고 있는 약품, 전통약재,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및 가공식품 형태의 할랄 제품 감독;
- c. 유통되고 있는 약품, 전통약재,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및 가공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 취소 권고;
- d. 약품, 전통약재,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및 가공식품 형태로 사회화, 교육 및 공포;

- e. 각각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할랄제품보장(JPH) 실시 관련 기타 업무 협력.

제 16 조

제 14 조 제(2)항 b 호에서 규정한 할랄인증청(BPJPH)과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분야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비부처 정부기관과의 협력은 다음과 같다:

- a. 법률의 규정에 따라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제도 준비; 및
- b. 각각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할랄제품보장(JPH) 실시 관련 기타 업무 협력.

제 17 조

제 14 조 제(2)항 c 호에서 규정한 할랄인증청(BPJPH)과 인가 분야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비구조적 기관간 협력은 다음과 같다:

- a. 할랄검사기관(LPH) 인가;
- b. 인가 계획안 작성;
- c. 인가 계획안 지원 서류 작성; 및
- d. 각각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할랄제품보장(JPH) 실시 관련 기타 업무 협력.

제 18 조

제 14 조 제(2)항 d 호에서 규정한 할랄인증청(BPJPH)과 할랄제품보장(JPH) 실시 관련 기타 분야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비부처 정부기관 또는 비구조적 기관과의 협력은 다음과 같다:

- a. 할랄 제품 사회화, 교육 및 공포; 및
- b. 각각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할랄제품보장(JPH) 실시 관련 기타 업무 협력

제 19 조

협력 절차에 관한 제 15 조에서 제 18 조까지의 규정은 장관령에 의해 규제된다.

제 4 부

할랄인증청(BPJPH)과 할랄 검사 기관(LPH)간 협력

제 20 조

- (1) 제 4 조 제 (4)항 b 호에서 규정한 할랄인증청(BPJPH)과 할랄검사기관(LPH)간 협력은 다음과 같다:
 - a. 할랄인증청(BPJPH)에 의해 규정된 제품 할랄성 검사 및/또는 시험; 그리고
 - b. 각각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할랄제품보장(JPH) 실시 관련 기타 업무 협력.
- (2) 제(1)항에서 규정한 협력 절차에 관한 조항은 장관령에 의해 규제된다.

제 5 부

할랄인증청(BPJPH)과 인도네시아 올라마 위원회(MUI)간 협력

제 21 조

- (1) 제 4 조 제 (4)항 c 호에서 규정한 할랄인증청(BPJPH)과 인도네시아올라마위원회(MUI)간 협력이란 다음과 같다:
 - a. 할랄 감사관 인증;
 - b. 제품의 할랄성 결정; 및
 - c. 할랄검사기관(LPH) 인가.
- (2) 이슬람 율법 적합 관련 제(1)항에서 규정한 협력은 인도네시아 올라마 위원회(MUI) 파트와에 따라 이행된다.

제 22 조

- (1) 제 21 조 제(1)항 a 호에서 규정한 할랄 감사관 인증에 관한 할랄인증청(BPJPH)과 인도네시아 올라마 위원회(MUI)간 협력은 교육훈련 및 역량 평가를 포함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한 할랄 감사관 인증 교육훈련은 할랄인증청(BPJPH)에 의해 시행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타교육훈련 기관에서 시행 가능하다.
- (3) 제(1)항에서 규정한 할랄 감사관 인증 역량 평가는 인도네시아 올라마 위원회(MUI)가 진행한다.
- (4)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할랄 감사관 인증 교육훈련 시행에 관한 추가 규정은 장관령에 의해 규제된다.

제 23 조

- (1) 제 21 조 제(1)항 b 호에서 규정한 제품 할랄성 결정에 관한 할랄인증청(BPJPH)과 인도네시아올라마위원회(MUI)간 협력은 다음 조항을 따른다:
 - a. 할랄검사기관(LPH)은 다음 문서들을 포함 제품 할랄성 검사/또는 시험 결과를 할랄인증청(BPJPH)에 제출한다:
 1. 사용된 제품 및 원료;
 2. 할랄제품공정(PPH);
 3. 분석 결과 및/또는 설명서;
 4. 검사 일정 보고서; 및
 5. 건의서;
 - b. 할랄인증청(BPJPH)은 a 호에서 규정한 할랄검사기관(LPH)이 제출한 검사 및/또는 시험 결과 검증을 진행한다;
 - c. 할랄인증청(BPJPH)은 b 호에서 규정한 검증결과를 인도네시아올라마위원회(MUI)에 제출한다;
 - d. 인도네시아올라마위원회(MUI)는 c 호에 규정된 할랄인증청(BPJPH) 검증 결과를 관련부처, 관련기관 및/또는 관련기구 전문가들과 함께 할랄 파트와 회의를 통해 검토한다;
 - e. 할랄 파트와 회의에서 할랄인증청(BPJPH)이 제출한 문서에 미기재된 추가 정보를 필요로할 경우, 인도네시아올라마위원회(MUI)는 문서의 재작성을 위해 해당 문서를 반송한다;
 - f. 제품의 할랄 또는 비할랄 여부 판단 할랄 파트와 회의 결과는 MUI 파트와위원회 의장 및 사무장이 서명하고, MUI 의장에게 공지한다; 그리고
 - g. 제품의 할랄 또는 비할랄 결정 통보는 인도네시아올라마위원회(MUI)가 할랄인증청(BPJPH)으로부터 검증 결과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최대 30 일 (근무일 기준)이내 할랄인증청(BPJPH)에게 통보한다.
- (2) 제(1)항 d 호에서 규정한 인도네시아올라마위원회(MUI)가 진행하는 할랄 파트와 회의는 BPJPH 가 지원한다.
- (3) 제(1)항 f 호에서 규정한 제품 할랄성 확정 결정은 할랄 인증서 발급 기준을 위해 할랄인증청(BPJPH)에게 제출한다

제 24 조

- (1) 이슬람 율법 적합성 평가 형태의 제 21 조 제(1)항 c 호에서 규정한 할랄검사기관(LPH) 인가 관련 할랄인증청 (BPJPH)과 인도네시아울라마위원회(MUI)간 협력.
- (2) 인도네시아울라마위원회(MUI)가 실시하는 이슬람 율법 적합성 평가는 할랄인증청(BPJPH)이 지원한다.
- (3) 제(1)항에서 규정한 할랄검사기관(LPH) 인가는 인가 분야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비구조적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 (4) 제(2)항에서 규정한 이슬람 율법 적합성 평가 지원 절차에 관한 조항은 장관령에 의해 규제된다.

제 6 부

국제 협력

제 25 조

- (1) 정부는 할랄제품보장(JPH) 분야 국제 협력을 진행할수 있다.
- (2) 제(1)항에서 규정한 할랄제품보장(JPH) 분야 국제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일수 있다:
 - a. 할랄제품보장(JPH) 개발;
 - b. 적합성 평가; 및/또는
 - c. 할랄 인증서 승인
- (3) 제(1)항에서 규정한 국제 협력은 할랄인증청(BPJPH)이 장관 및 외교 분야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과 조정 및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 (4) 제(2)항에서 규정한 국제 협력은 외교 정책, 국내법, 국제법 및 관습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제 26 조

- (1) 제 25 조 제(2)항 a 호에 규정된 할랄제품보장(JPH) 개발 국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기술 개발;
 - b. 인적 자원; 및
 - c. 할랄제품보장(JPH) 수단 및 인프라.
- (2) 제 25 조 제(2)항 b 호에서 규정한 적합성 평가 국제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상호간 승인; 및
 - b. 적합성 평가 결과 상호간 수용.
- (3) 제 25 조 제(2)항 c 호에서 규정한 할랄 인증서 승인 관련 국제 협력이란 상호간 할랄 인증서 승인 협력이다.
- (4)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할랄 인증서 상호 승인 형태의 국제 협력은 할랄 인증서 발급 권한이 있는 해외 할랄 기관들과 함께 진행된다.

제 27 조

제 26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외 할랄인증 기관이란 정부 또는 해당 정부가 인정한 이슬람 종교 기관에 의해 설립된 인증서 발급기관이다.

제 28 조

- (1) 제 26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적합성 평가 관련 국제 협력이란 적합성 평가 계획 개발에 대한 상호 승인 및 적합성 평가 결과 수용이다.
- (2) 해외 할랄 기관이 발급한 할랄 인증서는 상호간 적용되는 수용협약에 따라 할랄 인증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 (3) 제(2)항에서 규정한 할랄 인증서 발급 할랄 인증 기관이란 지역 또는 국제 인증 협력기관의 승인을 받고 본국 인가 기관에서 인가받은 기관이다.
- (4) 제 26 호 제(2)항 a 호에서 규정하는 상호 승인 협력은 제 14 조 제(2)항 c 호에서 규정한 인가 분야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비구조적 기관에 의해 진행된다.
- (5)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외 할랄 인증서에 대한 수용협약은

할랄인증청(BPJPH)이 장관 및 상호 적용되는 외교분야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과 조정 및 협의를 통해 수행된다.

제 29 조

할랄제품보장(JPH) 분야 국제 협력 절차에 관한 추가 규정은 장관령에 의해 규제된다.

제 III 장

할랄 검사 기관 (LPH)

제 1 부

할랄 검사기관 설립자

제 30 조

- (1) 정부 및/또는 지역사회는 할랄검사기관(LPH)을 설립할수 있다.
-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부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다.
-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사회란 법인 이슬람 종교 기관이다.

제 31 조

- (1) 제 30 조에서 규정하는 정부가 설립한 할랄검사기관 (LPH)에는 부처/기관, 지방정부, 국립대, 국영 기업 또는 지방정부 소유기업이 설립한 할랄검사기관(LPH)을 포함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처/기관 또는 지방정부가 설립한 할랄검사기관(LPH)은 업무수행 또는 부처/기관 기술 수행, 또는 지역 시설 기능을 한다.
-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립대가 설립한 할랄검사기관(LPH) 은 연구 및 사회봉사 분야의 일부이다.
-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영기업 또는 지방 정부 소유기업이 설립한 할랄검사기관(LPH)은:
 - a. 국영기업 또는 지방 정부 소유 기업의 서비스 사업 시설 일부이다; 또는

b. 국영기업 또는 지방 정부 소유 기업의 자회사이다.

제 32 조

- (1) 제 30 조에서 규정하는 지역사회 설립 할랄검사기관 (LPH)은 법인 이슬람 종교 기관에 의해 제안되어야 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이슬람 종교 기관에는 협회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제 2 부

할랄 검사 기관(LPH) 설립 요건

제 33 조

- (1) 제 31 조 와 제 32 조에서 규정한 정부 및/또는 지역사회 설립 할랄검사기관(LPH)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a. 자체 사무실과 집기;
 - b. 할랄인증청(BPJPH) 인가;
 - c. 최소 3 명의 할랄 감사관; 및
 - d. 연구소를 갖추고 있거나 연구소를 갖추고 있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계약.
- (2) 제(1)항 d 호에서 규정하는 연구소를 갖춘 다른 기관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할랄 범위내에서 인가받은 연구소를 갖추고 있는 정부 또는 지역사회가 설립한 기관.

제 34 조

제 33 조에서 규정하는 정부 및/또는 지역사회 할랄검사기관 (LPH)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문서로 검증한다:

- a. 소유권 증명서, 건물사용권, 토지 사용권, 임대 계약서, 토지 임대 계약서, 기증증서 또는 매매증서;
- b. 할랄검사기관(LPH)인가 증명서 및 할랄인증청(BPJPH)의 할랄검사기관(LPH)인가증;
- c. 할랄감사관 의향서와 인도네시아올라마위원회(MUI)의 인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할랄 감사관 보유 설명서; 및

- d. 인가분야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비구조적 기관의 연구소 인가 인증서 또는 제 33 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인된 연구소를 갖추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 계약서.

제 3 부

할랄검사기관(LPH) 인가

제 35 조

- (1) 할랄검사기관(LPH) 인가는 할랄인증청(BPJPH)이 시행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할랄검사기관(LPH) 인가 신청은 중앙기관뿐 아니라 지방기관, 국립대총장, 국영기업대표, 지방정부 소유기업 대표 및 법인 이슬람 종교기관 지도자 등 할랄제품보장(JPH) 실시 관련 책임자가 청장에게 신청한다.
- (3)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할랄검사기관(LPH) 인가 신청은 반드시 지원 문서를 첨부하여 매뉴얼 또는 전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4)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원 문서는 다음과 같다:
 - a. 제 34 조에 규정된 문서;
 - b. 품질 방침, 최소한의 조직도, 품질 정책, 공정성 관리, 자원 요건, 프로세스 요건, 관리 시스템 요건, 불만 사항 처리 및 해결 절차, 감사 범위 및 계획, 공공 정보의 기밀성 과 개방성 및 이용 가능성; 그리고
 - c. 최소한의 할랄 감사관 역량 지원 목록으로 구성된 품질 방침 지원 문서, 지원 연구소 목록, 감사 목록, 내부 감사 기록, 관리 검토, 불만 사항 처리 및 해결 처리 표준 운영 절차, 감사 계획안, 책임 및 재무 표준 운영 절차, 기밀유지 서약서, 공공 정보 공개 서약서.

제 36 조

- (1) 할랄인증청(BPJPH)은 제 35 조에서 규정한 문서를 접수 후 늦어도 5 일 이내 검증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한 문서에 대한 검증은 문서의 적법성 및 현장 감사를 통해 검증한다.
- (3) 제(2)항에서 규정한 문서에 대한 검증은 임무 수행증을 갖춘 검증팀에 의해 수행된다.

제 37 조

제 36 조에서 규정한 문서의 검증 결과가 요건을 준수하였을 경우, 청장은 할랄검사기관(LPH) 인가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38 조

- (1) 제 36 조에서 규정한 문서의 검증 결과가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경우, 청장은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 요청서를 전달한다.
- (2) 신청인은 제(1)항에서 규정한 추가 서류 요청서 수령일로부터 늦어도 5 일(근무일 기준) 이내 청장에게 필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3) 제(2)항에서 규정한 추가 서류 요건을 준수하거나 준수했을 경우, 청장은 할랄검사기관(LPH)인가 증명서를 발급한다.
- (4) 제(3)항과 제 37 조에서 규정한 할랄검사기관(LPH) 인가 증명서는 부처장 및/또는 기관장 또는 국립대 총장 및 법인 이슬람 종교기관 지도자에게 제출한다.
- (5) 부처장 및/또는 기관장 또는 국립대 총장 및 법인 이슬람 종교기관 지도자는 등록 확정 결정일로부터 늦어도 5 일(근무일 기준)이내 청장에게 할랄검사기관(LPH)설립 결정서 사본을 제출 한다.
- (6) 제(5)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은 청장이 할랄검사기관 (LPH)에게 할랄 제품의 검사 및/또는 시험 수행 위임 기준이 된다.

- (7) 제(2)항에서 규정하는 추가 서류 요청서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청장은 신청인을 호출하여 불합격 통보 및 탈락 사유와 함께 서류를 반환한다.

제 39 조

- (1) 할랄검사기관(LPH) 적합성 평가 수행을 위한 제 17 조 a 호에서 규정하는 할랄검사기관(LPH) 인가는 할랄검사기관(LPH)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할랄인증청(BPJPH)이 발급한 할랄검사기관(LPH) 인가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가 분야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비구조적 기관에게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진행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가 분야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비구조적 기관은 할랄인증청(BPJPH) 및 인도네시아올라마위원회(MUI)와 협력한다
-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할랄검사기관(LPH) 적합성 평가는 최소한의 할랄검사기관(LPH) 적합성 문서 및 기술 평가 과정 검토를 통해 진행한다.
- (4) 제(3)항에서 규정한 할랄검사기관(LPH) 적합성 평가 결과는 할랄인증청(BPJPH)에 제출한다.
- (5) 청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할랄검사기관(LPH) 적합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할랄검사기관(LPH) 인가증을 발급한다.
- (6) 할랄검사기관(LPH)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추가 규정은 장관령에 의해 규제된다.

제 4 부

할랄 감사관(Halal Auditor)

제 40 조

- (1) 할랄검사기관(LPH)은 감사관을 임용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한 할랄검사기관(LPH)이 지명한 할랄 감사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준수해야한다:
- a. 인도네시아 국민;

- b. 이슬람교도;
 - c. 최소학력 : 식품, 화학, 생화학, 산업공학, 생물학 또는 약학 전공 대학 졸업자;
 - d. 이슬람 율법에 따라 제품 할랄성에 대한 이해와 넓은 통찰력을 지닌자;
 - e. 개인 및/또는 집단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자;
 - f. 인도네시아울라마위원회(MUI) 인증서 취득자.
- (3) 할랄인증청(BPJPH)은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할랄 감사관을 등록해야 한다.
- (4) 제(1)항에서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한 할랄 감사관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a. 사용 원료 검사 및 조사;
 - b. 제품 가공 과정 검사 및 조사;
 - c. 도살 시스템 검사 및 조사;
 - d. 제품 지역 조사;
 - e. 설비, 생산 공간 및 저장 공간 조사;
 - f. 제품 유통 및 출하 조사;
 - g. 사업자 할랄 보장 시스템 검사; 및
 - h. 할랄검사기관(LPH)에 검사 및/또는 시험 결과 보고.
- (5) 할랄 감사관 등록에 관한 추가 규정은 장관령에 의해 규제된다.

제 41 조

- (1) 할랄검사기관(LPH)은 할랄 감사관을 해임할수있다.
- (2) 할랄검사기관(LPH)은 다음의 경우 제(1)항에 규정된 할랄 감사관 해임을 집행한다:
- a. 제 4 조 제 (2) 항에서 규정한 요건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 b. 사망; 사퇴;
 - c. 윤리 또는 중차대한 직업 규율 위반이 판명될 경우; 또는
 - d. 영구적 법적 효력을 지닌 판사의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을경우.

제 42 조

할랄 감사관의 임용 및 해임 절차에 관한 규정은 장관령에 의해 규제된다.

제 IV 장

할랄 제품 공정(PPH) 지역, 장소 및 설비

제 1 부

일반

제 43 조

- (1) 할랄 제품 공정 지역, 장소 및 설비는 비할랄 제품 공정 지역, 장소 및 설비와 분리해야 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할랄제품공정(PPH) 지역, 장소 및 설비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a. 청결과 위생을 유지;
 - b. (이슬람 종교상)불결함이 없어야 한다.
 - c. 비할랄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분리되어야 하는 지역이란 도축지역을 의미한다.
-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할랄제품공정(PPH) 장소 및 설비를 분리해야 하는 장소 및 설비로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도축;
 - b. 가공;
 - c. 저장;
 - d. 포장;
 - e. 유통;
 - f. 판매; 및
 - g. 출하;

제 2 부

도축 할랄 제품 공정 지역, 장소 및 설비

제 44 조

할랄 도축 지역, 장소 및 설비는 비할랄 도축 지역, 장소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제 45 조

제 43 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도축 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a. 할랄 도축장과 비할랄 도축장간 지역은 물리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 b. 도축장간 사람, 장비 및 제품의 이동 방지를 위해 최소 3미터 높이의 담장으로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 c. 홍수 취약, 연기, 냄새 및 그밖의 오염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지역;
- d. 비할랄 도축장과 분리된 고체 및 액체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e. 건물 전체의 기초 공사는 반드시 오염을 막을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 f. 별도의 도축용 가축의 출입문과 몸통 및 고기의 출구문을 갖추어야 한다;

제 46 조

제 43 조 제(4)항 a 호에서 규정하는 도살실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할랄 및 비할랄을 철저히 구분 사용해야 한다

- a. 가축격리실;
- b. 도축실;
- c. 원피처리실
- d. 내장처리실;
- e. 숙성실;
- f. 몸통 처리실;
- g. 냉동실; 및
- h. 폐기물 처리 시설.

제 47 조

제 43 조 제(4)항 a 호에서 규정한 도축 설비는 다음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a. 비할랄 도축에 사용되는 도축 설비와 번갈아 사용하지 않는다;
- b. 할랄 및 비할랄 설비 청소에 각자 다른 청소 설비를 사용한다;

- c. 할랄 및 비할랄 설비 유지보수에 각각 다른 설비를 사용한다;
그리고
- d. 할랄 및 비할랄은 각각 다른 자체 설비 보관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 3 부

가공 할랄 제품 공정 장소 및 설비

제 48 조

제 43 조 제(4)항 제 b 호에서 규정하는 가공실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
할랄 및 비할랄 제품을 철저히 구분 사용해야 한다

- a. 원료 저장실;
- b. 원료 계량실;
- c. 원료 배합실;
- d. 제품 인쇄실; 및
- e. 제품 조리실,

제 49 조

제 43 조 제(4)항 제 b 호에서 규정하는 가공 설비는 다음의 요건을
준수해야한다:

- a. 비할랄 제품 가공에 사용되는 가공설비와 번갈아 사용하지
않는다;
- b. 할랄 및 비할랄 설비 청소에 각자 다른 청소 설비를 사용한다;
- c. 할랄 및 비할랄 설비 유지 보수에 각각 다른 설비를 사용한다;
그리고
- d. 할랄 및 비할랄은 각각 다른 자체 설비 보관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 4 부

저장 할랄 제품 공정 장소 및 설비

제 50 조

제 43 조 제(4)항 c 호에서 규정하는 저장실은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장소에 할랄 및 비할랄을 철저히 구분 사용해야 한다

- a. 원료 취급실;

- b. 가공후 제품 취급실; 및
- c. 원료 및 제품 저장에 사용되는 설비

제 51 조

제 43 조 제(4)항 c 호에서 규정하는 저장 설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a. 비할랄 제품 저장에 사용되는 설비와 번갈아 사용하지 않는다;
- b. 할랄 및 비할랄 설비 청소에 각자 다른 청소 설비를 사용한다;
- c. 할랄 및 비할랄 설비 유지 보수에 각각 다른 설비를 사용한다;
그리고
- d. 할랄 및 비할랄은 각각 다른 자체 설비 보관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 5 부

포장 할랄 제품 공정 장소 및 설비

제 52 조

제 43 조 제(4)항 d 호에서 규정한 포장실은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장소에 할랄 및 비할랄 제품을 철저히 구분 사용해야 한다

- a.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 원료; 및
- b. 제품 포장 설비

제 53 조

제 43 조 제(4)항 d 호에서 규정하는 포장 설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a. 비할랄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설비와 번갈아 사용하지 않는다;
- b. 할랄 및 비할랄 설비 청소에 각자 다른 청소 설비를 사용한다;
- c. 할랄 및 비할랄 설비 유지 보수에 각각 다른 설비를 사용한다;
그리고
- d. 할랄 및 비할랄은 각각 다른 자체 설비 보관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 6 부
유통 할랄 제품 공정 장소 및 설비

제 54 조

제 43 조 제(4)항 제 e 호에서 규정하는 유통장소는 다음과 같은 수단 및 장비에 할랄 및 비할랄을 철저히 구분 사용해야 한다:

- a. 저장실에서 제품 유통 설비로 운송하는 수단; 및
- b. 제품 유통을 위한 운송 장비

제 55 조

제 43 조 제(4)항 e 호에서 규정하는 유통 설비는 다음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a. 비할랄 제품 유통에 사용되는 유통 설비와 버갈아 사용하지 않는다;
- b. 할랄 및 비할랄 설비 청소에 각자 다른 청소 설비를 사용한다;
- c. 할랄 및 비할랄 설비 유지 보수에 각각 다른 설비를 사용한다; 그리고
- d. 할랄 및 비할랄은 각각 다른 자체 설비 보관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 7 부
판매 할랄 제품 공정 장소 및 설비

제 56 조

제 43 조 제(4)항 f 호에서 규정하는 판매장은 다음과 같은 수단 및 과정에 할랄 및 비할랄 제품을 철저히 구분 사용해야 한다:

- a. 제품 판매 수단; 및
- b. 제품 판매 과정

제 57 조

제 43 조 제(4)항 f 호에서 규정한 판매 설비는 다음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a. 비할랄 제품 판매에 사용되는 판매 설비와 번갈아 사용하지 않는다;
- b. 할랄 및 비할랄 설비 청소에 각자 다른 청소 설비를 사용한다; 그리고
- c. 할랄 및 비할랄 설비 유지 보수에 각각 다른 설비를 사용한다;

제 8 부

출하 할랄 제품 공정 장소 및 설비

제 58 조

제 43 조 제(4)항 g 호에서 규정하는 출하장은 다음과 같은 수단 및 과정에 할랄 및 비할랄 제품을 철저히 구분 사용해야 한다:

- a. 할랄 제품 출하 수단; 및
- b. 제품 출하 과정

제 59 조

제 43 조 제(4)항 g 호에서 규정하는 출하 설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a. 비할랄 제품 출하에 사용되는 출하 설비와 번갈아 사용하지 않는다;
- b. 할랄 및 비할랄 설비 청소에 각자 다른 청소 설비를 사용한다;
- c. 할랄 및 비할랄 설비 유지 보수에 각각 다른 설비를 사용한다; 그리고
- d. 할랄 및 비할랄은 각각 다른 자체 설비 보관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 60 조

- (1) 비할랄 동물 유래 신선 제품의 유통, 판매 및 출하는 할랄 동물 유래 식품과 분리 유통, 판매 및 출하한다.
- (2)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성명서로 입증된 비할랄 동물 유래 신선 제품 유통에 교차 사용되어 오염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비할랄 동물 유래 및 비동물 유래 가공제품 유통은 할랄 동물 유래 및 비동물 유래 가공제품과 함께 유통 가능하다.
- (3) 비할랄 동물 유래 및 비동물 유래 신선 및 가공제품의 판매와 출하는 할랄 동물 유래 및 비동물 유래 신선 및 가공제품의 판매 및 출하와 분리한다.
-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제품의 유통, 판매 및 출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현된다.

제 V 장
할랄 인증 비용

제 61 조

- (1) 할랄 인증 비용은 할랄 인증서를 신청한 사업자가 부담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할랄 인증 비용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차별성이 없어야 한다.
- (3) 할랄 인증 금액 또는 명목상의 비용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62 조

- (1) 사업자가 소상공인이거나 소기업일 경우 인증 비용은 제 3 자가 지원할 수 있다.
- (2) 제(1)항에서 규정한 제 3 자 지원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지원이다:
 - a. 국가 기금(예산)을 통한 중앙 정부의 지원;
 - b. 지방 기금(예산)을 통한 지방 정부의 지원;
 - c. 기업 지원;
 - d. 사회 기관 지원;
 - e. 종교 기관 지원;
 - f. 협회 지원; 또는
 - g. 지역 사회 지원.

제 63 조

할랄 인증 비용 지불 절차 및 할랄 인증 비용 제 3 자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은 장관령에 의해 규제된다.

제 VI 장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 절차

제 64 조

- (1) 제 28 조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할랄인증청(BPJPH)과 할랄 인증 상호 승인 협력하는 해외 할랄 기관에서

할랄인증서가 발급된 할랄 제품은 할랄 인증서 신청을 할필요가 없다.

- (2) 제(2)항에서 규정한 해외 할랄 기관에서 발급된 할랄 인증서는 인도네시아에 제품 유통전 할랄인증청(BPJPH)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 (3) 인도네시아 유통전 해외 할랄 기관에서 할랄 인증서가 발급된 할랄 제품은 제(2)항에서 규정한 할랄 인증서 등록 의무 준수 외에 관련 제품 유통 요건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65 조

- (1) 제 64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은 사업자가 할랄인증청(BPJPH)에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a. 해외 인도네시아 대표에 의해 공인된 관련 제품 해외 할랄 인증서 사본;
 - b. HS 코드번호가 부여된 인도네시아로 수입될 품목 목록; 및
 - c. 제출한 서류는 사실이며 유효하다는 진술서.
-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 신청은 매뉴얼 또는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청할수 있다.

제 66 조

- (1) 청장은 제 64 조 및 제 65 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준수한 해외 발급 할랄 인증서에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한 등록 번호를 취득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부분 할랄 라벨 근처에 등록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 a. 제품 포장;
 - b. 제품의 특정 부분; 그리고/또는
 - c. 제품의 특정 장소
- (3)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에 관한 추가 규정은 장관령에 의해 규제된다.

제 67 조

할랄인증청(BPJPH)과 협력 관계가 없는 해외 할랄기관에서 발급된 할랄 인증서의 경우, 사업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할랄 인증을 진행해야만 한다.

제 VII 장

제품 종류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 단계화

제 68 조

- (1) 할랄 인증서 필수 제품은 다음과 같다:
 - a. 물품; 그리고/또는
 - b. 서비스.
- (2) 제(1)항 제 a 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식품;
 - b. 음료;
 - c. 약품;
 - d. 화장품;
 - e. 화학 제품;
 - f. 생물학적 제품;
 - g. 유전 공학 제품; 및
 - h. 착용, 사용하는 또는 활용하는 물품.
-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관련된 사업 서비스를 포함한다:
 - a. 도살;
 - b. 가공;
 - c. 저장;
 - d. 포장;
 - e. 유통;
 - f. 판매; 및
 - g. 출하

제 69 조

- (1) 제 68 조 제(2)항 a 호 부터 d 호까지 규정한 식품, 음료, 약품 및 화장품의 각 유형은 장관이 관련 부처, 관련 기관 및 인도네시아올라마위원회(MUI)와 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한 조정은 할랄인증청(BPJPH)이 지원한다.

제 70 조

제 68 조 제(2)항 e 호부터 g 호까지 규정한 화학 제품, 생물학적 제제, 유전 공학 제품과 제 68 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서비스는 식품, 음료, 약품 또는 화장품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제 71 조

- (1) 제 68 조 제(2)항 제 h 호에서 규정한 착용, 사용하는 또는 활용하는 물품은 동물 유래 및/또는 동물성분을 함유한 상품에 한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착용하는 물품이란 다음과 같다:
 - a. 옷감;
 - b. 머릿수건; 및
 - c. 액세서리.
-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하는 물품이란 다음과 같다:
 - a. 가정용 건강 용품;
 - b. 가정 용품;
 - c.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예배 용품;
 - d. 식품 및 음료 포장; 및
 - e. 문구 및 사무용품.
-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활용하는 물품이란 건강용품이다.
-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물품은 관련 부처, 관련 기관 및 인도네시아올라마위원회(MUI)와 조정을 거쳐 장관이 물품의 종류를 추가 할수 있다.
- (6) 제(5)항에서 규정하는 조정은 할랄인증청(BPJPH)이 지원한다.

제 72 조

- (1) 제 68 조부터 제 71 조까지 규정한 제품 종류에 대한 할랄 인증서 의무는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품 종류에 대한 할랄 인증서 보유 의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a. 제품 할랄성 의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b.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2014 년 법률 제 33 호 시행전 할랄 인증서를 취득한 제품;

- c.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대량으로 소비되는 제품
 - d. 비할랄 가능성이 높은 제품;
 - e. 사업자 준비 및;
 - f. 할랄 제품 보장 실시 인프라 준비.
-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단계화는:
- a. 식품과 음료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 b. 그 다음으로 식품과 음료 이외의 제품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4) 2019년 10월 17일에 할랄 인증서 미취득 제품은 관련 부처/기관과 조정을 거쳐 장관령에 의해 추가적으로 규제된다.
- (5) 제(3)항에서 규정한 제품 종류에 대한 할랄 인증서 의무 단계화에 관한 규정은 관계 부처/기관과 조정을 거쳐 장관령에 규제된다.

제 73 조

제 72 조에서 규정하는 단계화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동물성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서 의무를 폐지 하지 않는다.

제 74 조

- (1) 할랄 인증을 진행하는 약품, 생물학적 제품 및 건강용품 형태의 제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유용성 및 품질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2) 원료의 출처/또는 제조과정이 할랄인지 불분명한 약품, 생물학적 제품 및 건강용품의 경우 할랄 원료 사용의 여부 및 할랄 제조 과정 여부가 밝혀질때까지 원료의 출처 정보를 부착하여 유통할수 있다.
- (3) 제(1)항에서 규정한 할랄 인증을 진행하는 약품, 생물학적 제품 및 건강용품은 안전성, 유용성 및 품질 요건 준수외에 올바른 할랄 제조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 (4) 제(2)항에서 규정한 원료의 출처/또는 제조과정이 할랄인지 불분명한 약품, 생물학적 제품 및 건강용품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올바른 할랄 제조 과정 준수에 관한 추가 규정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된다.

제 VIII 장

감독

제 75 조

- (1)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제품보장(JPH)을 감독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할랄제품보장(JPH)에 대한 감독은 직무 및 역할에 따라 할랄인증청(BPJPH)이 개별 또는 관련 부처, 관련 및/또는 지방 정부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3) 할랄인증청(BPJPH), 관련부처, 관련기관 및/또는 지방정부에 의한 할랄제품보장(JPH) 감독은 할랄제품보장(JPH) 감독관이 수행한다.

제 76 조

- (1) 제 75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할랄제품보장(JPH) 감독관은 각 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이 할랄제품보장(JPH)에 대한 감독 수행 허가 권한을 부여한 국가 공무원이다.
-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할랄제품보장(JPH) 감독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정보에 포함된 공식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할랄제품보장(JPH) 감독관은 감독 업무 수행 시 임무 수행증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제 77 조

- (1) 다음에 대하여 할랄제품보장(JPH) 감독이 시행된다:
 - a. 할랄검사기관(LPH);

- b. 인증서 유효기간;
 - c. 제품 할랄성;
 - d. 할랄 라벨 부착;
 - e. 비할랄 설명서 부착 여부;
 - f. 할랄 및 비할랄 제품 간 지역, 장소 및 도살 설비, 가공, 저장, 포장, 유통, 판매 및 출하 분리;
 - g. 할랄 감독관 존재 여부; 그리고/또는
 - h. 그외 할랄제품보장(JPH) 관련 활동들.
- (2) 제(1)항에서 규제하는 감독은 정기적으로 또는 언제든지 시행한다
 - (3) 제(2)항에서 규정한 정기적 감독은 6 개월에 1(한)번 시행한다.
 - (4) 제(2)항에서 규정한 언제든지 시행하는 감독은 필요에 따라 또는 법률의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다.

제 78 조

- (1) 제 77 조 제(1)항 e 호에서 규정한 비할랄 설명 부착 여부 감독은 제품에 대하여 시행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한 제품에 비할랄 설명은 이미지, 표시 및/또는 글씨 형태 일수 있다.
- (3) 제(2)항에서 규정한 이미지, 표시 및/또는 글씨에 관한 규정에는 특히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보호와 인권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할랄 설명에 관한 추가 규정은 장관령에 의해 규제된다.

제 79 조

- (1) 할랄인증청(BPJPH), 관련 부처, 관련 기관 및/또는 지방정부는 할랄제품보장(JPH) 감독을 시행하는데 있어 관련 조직을 참여시킬수 있다.
-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련 조직은 할랄제품보장(JPH) 감독 시행시 지원 활동으로 참여 할수 있다.

제80조

제 77 조에서 규정한 감독에 관한 추가 규정은 장관령에 의해 규제된다.

제 IX 장

경과(과도기) 규정

제 81 조

할랄 인증 금액 또는 명목상의 비용 확정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해당 정부 규정이 적용되었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 할랄 인증서 또는 연장 신청은 본 정부 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된 할랄 인증서 취득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제 82 조

본 정부 규정 제정 이전에 유통되고 거래되었으며 할랄 인증서가 있거나 제 81 조에 따라 할랄 인증서를 보유한 제품은 해당 할랄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 X 장

종결

제 83 조

본 정부 규정이 시행되면 할랄제품보장(JPH)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의 모든 시행규정은 본 정부 규정의 조항에 저촉하지 않는한 계속 효력을 지닌다.

제 84 조

본 정부 규정은 공표날부터 시행한다.

모든 국민이 본 규정을 인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가 관보에 게재하여 공표한다.

자카르타에서 제정

2019 년 4 월 29 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JOKO WIDODO

자카르타에서 공표

2019 년 5 월 3 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인권부 장관

YASONNA H. LAOLY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 88 호